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

1. 관련 : 보험급여과-1575(2022.3.25.)
2. 「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」 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적용기간 : (당초) 2022.3.2. ~ 2022.3.31. → (변경) 2022.3.2. ~ 2022.4.15.

붙임 코로나19 소아 확진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(1부)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서울특별시청, 부산광역시청, 대구광역시청, 인천광역시청, 광주광역시청, 강원도지사, 대전광역시청, 충청북도지사, 울산광역시청, 충청남도지사, 경기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청

주무관	강지은	사회복지사무관	황지민	보험급여과장	2022.3.31. 이중규
-----	-----	---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1629 (2022. 3. 31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10동 7층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43 팩스번호 044-202-1972 / jieun0946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